

비전임교원임용규정

(제정 2020. 8.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좌교수란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하여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② 명예교수란 본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③ 특임교수란 본교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연구,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고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④ 겸임교수란 실무, 실습,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교과 및 그 밖의 특수목적 교과를 교수하게 하려고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⑤ 객원교수란 외부에서 초청되어 강의 및 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고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⑥ 초빙교수란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려고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⑦ 연구교수란 전공 분야의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려고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⑧ 겸직교수란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실무 경험에 필요한 교과 및 그 밖의 특수목적에 위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4.3.1.>

제3조(준용) <삭제 2020.11.17.>

제2장 석좌교수

제4조(자격) 석좌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사람
2. 학계 및 사회로부터 덕망이 높아 칭송받는 사람
3. 연구 및 교육경력과 전문직 종사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제5조(임용) ① 석좌교수는 교무처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② 계약 조건에는 직위, 주당 강의시간, 임무, 임용기간,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총장이 정하되 외부의 출연기금에 의해 임용된 석좌교수는 해당 석좌교수기금 또는 기부금이 계속 출연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의 강의 및 연구

2. 특별 강의 및 세미나
3. 그 밖에 교육, 연구 및 행정에 관한 자문

제6조(제출서류) 석좌교수 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 부서장이 작성한 교육, 연구 및 봉사업적에 근거한 추천서
2. 연구업적 조서
3. 이력서
4. 그 밖에 석좌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7조(처우) 석좌교수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연구비는 개인별 지급 금액 규모에 따라 연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명예교수

제8조(자격) ① 명예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교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총장 또는 교수로 퇴직한 사람 <개정 2020.11.17.>
2. 재직 중 본교의 발전에 공헌이 뚜렷하거나 업적이 현저한 사람
3. 법정 정년 연령이 된 사람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교원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임용) ① 명예교수는 교무처장 또는 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직위는 종신으로 한다.

③ 총장은 명예교수로 임용된 사람이 법규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명예교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출서류) 명예교수 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장이 작성한 교육, 연구 및 봉사업적에 근거한 추천서
2.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
3. 학과 교수회의 회의록
4. 그 밖에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1조(처우) ① 명예교수에게 공동 연구실을 배정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연령은 만 67세가 되는 학기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7.>

③ 명예교수의 강의시수는 주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은 소속 학과(전공)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④ 명예교수의 강의료는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1.17.>

제4장 특임교수

제12조(자격) 특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업적이 뛰어난 사람
2. 정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기관 임원 경력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서 본교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난 사람
4. 그 밖에 본교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13조(임용) ① 특임교수는 교무처장 또는 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 ② 계약 조건에는 직위, 주당 강의시간, 임무, 임용기간,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는 한 당연 면직된다.

제14조(제출서류) 특임교수 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장이 작성한 교육, 연구 및 봉사업적에 근거한 추천서
2.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3. 학력 및 성적증명서
4. 재직 및 경력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그 밖에 특임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15조(처우) ① 특임교수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특임교수가 주당 계약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는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 ③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 ④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5장 겸임교수

제16조(자격) 겸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교수 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사람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유사경력 3년 이상)

제17조(임용) ① 겸임교수 신규임용은 「강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② 계약 조건에는 직위, 주당 강의시간, 임무, 임용기간,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겸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또는 실험 실습
 2.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3. 그 밖에 교육 활동 지원
- ④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는 한

당연 면직된다.

⑤ 총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2. 교무처장 또는 해당 학(원)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제출서류) 겸임교수 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겸임교수 임용신청서
2. 이력서
3. 학력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본직 기관장 동의서
6. 추천서 (추천시에 한함)
7. 그 밖에 겸임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19조(처우) 겸임교수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객원교수

제20조(자격) ① 객원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지방단체, 산업체, 예술단체, 법조분야 등 실무분야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연구나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
2. 부속기관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3. 외국어, 사회교육 또는 그 밖에 특수분야의 강의나 실습을 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외국인 객원교수는 임무에 적합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관련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교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없이 입국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임용) ① 객원교수는 교무처장, 학(원)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되 직무에 따라 연구교수 또는 연구원의 명칭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계약 조건에는 직위, 주당 강의시간, 임무, 임용기간,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되 무보수로 임용할 경우 계약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는 한 당연 면직된다.

제22조(제출서류) 객원교수 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2. 학력 및 성적증명서
3. 학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현지 공관 확인 필)
4. 재직 및 경력증명서
5.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6. 그 밖에 객원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23조(처우) ① 객원교수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국외에 거주하는 인사를 객원교수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항공료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교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③ 객원교수에게 필요에 따라 사택과 연구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초빙교수

제24조(자격) 초빙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전 호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제25조(임용) ① 초빙교수 신규임용은 「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초빙교수의 임용계약은 주당 강의시간, 임용기간,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급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

③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는 한 당연 면직된다.

④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초빙교수에게 강의 외에 학생 지도 및 연구 지도 등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과(부)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교내에 관련 분야 전임교원이 없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 및 처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1.>

제26조(제출서류) 초빙교수 임용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2. 학력 및 성적 증명서
3. 재직 및 경력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 함)
6. 그 밖에 초빙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27조(처우) 초빙교수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연구교수

제28조(자격) 연구교수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내·외 연구과제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연구분야 및 성과 등에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임용) ① 연구교수 채용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 ② 연구교수 채용절차는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서류접수, 전형, 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연구교수를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소 및 사업단 등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계획에는 채용분야, 지원자격, 제출서류, 심사방법, 임용기간,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채용공고는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전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연구교수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해당 사업단장(또는 연구소장 등)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1. 서류심사는 채용계획에서 정한 심사방법을 따르되,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제26조에서 정한 서류의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2.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상위 3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 ⑥ 산학협력단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임용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는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을 우선하며, 최고득점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⑦ 연구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과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 ⑧ 계약 조건에는 직위, 임용기간, 근무부서,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⑨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는 한 당연 면직된다.

제30조(서류제출) 연구교수 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지원하는 사람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면제한다.

1. 임용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학위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4. 경력 및 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최근 3년간 연구업적(논문, 특허, 산학협력 등)
7. 임용 시 연구계획서
8. 그 밖에 연구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31조(처우) ①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하되 무보수로 할 수 있다.

- ② 보수는 산학협력단 또는 해당 사업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겸직교수

제32조(자격) 겸직교수(JA, Joint Appointment)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강의 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며 풍부한 실무 경력이 있는 현직자(유사경력 6년 이상)

[조명변경 2024.3.1.], [본조개정 2024.3.1.]

제33조(임용) ① 겸직교수 신규임용은 「강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계약 조건에는 직위, 주당 강의시간, 임무, 임용기간,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겸직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실무 관련 실험·실습
2.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3. 연구 및 논문 지도
4. 학과 홍보 및 학생 지도
5. 그밖의 교육 활동 지원

④ 겸직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는 한 당연 면직된다.

⑤ 총장은 겸직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제3항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교무처장 또는 해당 학(원)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명변경 2024.3.1.], [본조개정 2024.3.1.]

제34조(제출서류) 겸직교수 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지원서 및 이력서
2. 학력증명서
3. 재직증명서
4. 본직 기관장 동의서
5.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추천서 (추천 시에 한함)
7. 그 밖에 겸직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

[조명변경 2024.3.1.], [본조개정 2024.3.1.]

제35조(처우) 겸직교수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

[장명변경 2024.3.1.]

제10장 보칙

제36조(계약해지 등) ① 교원은 계약 조건 및 본교의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재

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원의 강의평가 점수가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강의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내에 재계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3.1.]

제37조(강의료 지급) 교원의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3.1.]

제38조(면직)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5세가 된 교원은 해당 학기의 말에 면직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연령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본조신설 2024.3.1.]

[본장신설 2024.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명예교수 운영 세칙」, 「특임교수에 관한 규정」, 「겸임교수에 관한 규정」, 「객원교수에 관한 규정」, 「초빙교수에 관한 규정」, 「연구교수 임용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제2항의 명예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연령은 2020학년도까지는 70세로 하되 2023학년도까지 매년 1년씩 단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